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09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126,2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가.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이 1994. 7. 4. 설립될 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주였다.

나. B의 설립 당시 원고는 45,000주, C은 15,000주, D는 22,500주, E, F, G, H은 각 15,000주, I은 7,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D는 위 22,500주에 1999. 1. 15. 유상증자 3,000주, 2000. 1. 12. 유상증자 10,000주, 2002. 2. 23. 무상증자 3,988주, 2002. 4. 1. 유상증자 16,952주, 2004. 11. 2. 무상증자 11,966주를 각각 받아 2013. 9. 30.까지 합계 68,40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J은 1999. 11. 9. G이 가지고 있는 주식 15,000주를 양수하였고, 그 후 2002. 2. 23. 무상증자 1,685주, 2002. 4. 1. 유상증자 7,163주, 2004. 11. 2. 무상증자 5,056주를 각각 받아 2013. 9. 30.경 합계 28,90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위 D, J의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redacted]국세청은 2013. 7.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2013. 9. 2.경 D와 J은 B에 관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모두 A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수탁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A이고, 출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도 본인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redacted]국세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세무조사결과 [redacted]국세청은 원고가 D, J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이에 따라 [redacted]국세청에서는 ① J에 대한 위 1999년 양수분, 2002년 무상증자분, 2002년 유상증자분. 2004년 무상증자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J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1] ② D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대해서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15년)이 도과한 1994년분을 제외한 위 1999년 및 2000년 유상증자분, 2002년 무상증자분, 2002년 유상증자분, 2004년 무상증자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D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2013. 9. 30. D, J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사. 이에 따라 D, J은 2013. 9. 30.자로 위 주식의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원래 보유하고 있던 B에 대한 총주식의 56.78%에 해당하는 194,762주에 D의 68,406주, J의 28,904주의 명의자가 되었으며, 원고의 주식은 292,072주로 총주식의 85.15%가 되었다.

아. 원고의 B에 대한 총주식의 비율이 28.37%가 증가하게 되자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가 B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B 주식 총액에 대하여 원고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B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일인 2013. 9. 30. B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가액 2,493,926,320원에서 증가된 과점 비율인 28.37%를 곱한 707,526,8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12. 10. 취득세 20,126,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

1) 갑 제5호증의 2의 조사내용에 증여의제 23,848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4년 무상증자분 5,056주를 기재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나머지가 모두 명의신탁이라고 본다면 유상증자도 아닌 무상증자 부분만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그 별지로 되어 있는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는 2004년의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J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원고가 D, J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고, 실질주주인 원고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D, J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redacted]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D, J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3. 9. 2.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B의 주식은 전부 A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수탁한 것이라는 기재의 확인서를 [redacted]국세청에 제출한 사실, [redacted]국세청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 J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일부 주식을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D, J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조사 이후 원고와 D, J 사이에 2013. 10. 11.자로 원고에게 주식소유권을 환원하고,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명의신탁해지 소유권환원 약정서가 작성된 점, ② 2013. 11. 11. B에서 주식 명의개서 환원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기도 한 점, ③ 영월세무서에서 D, J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포함한 명의신탁 의제에 따른 세금 일체를 원고 A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스캔 파일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일부 성명 부분이 명확히 보이지 않게 스캔이 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해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스캔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별히 D, J에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만을 원고가 낼 이유는 없는 점, 세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스캔이 불량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증여세를 원고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B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던 시점인 2002. 4. 1. 원고가 B으로부터 8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유상증자대금 전액인 850,000,000원이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B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가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탈루여부도 함께 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차명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J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는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실질주주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13. 9. 3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윤아영

판사 정우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5

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끝.